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453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안 제4조, 제9조의4, 제20조)	2
※ 참고자료	
1.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2026년 기준)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안 제4조, 제9조의4, 제20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포함하는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따른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연구장려금·생활보조금 지원 등의 대상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의4,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1의3. ----- ---신진연구자 및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제9조의4(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①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현행	개정안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u>있는 사람</u>(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u>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u>신진연구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 ----- ----- -----<u>있는 사람 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u>----- ----- ----- -----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①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기본계획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¹⁾).

○ 또한, 특별히 ②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경력 설계·개발 지원과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제9조의4²⁾)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③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음.

○ 현행법령³⁾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은 이공계 박사학위

-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서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
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
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반면, 신진연구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 제4조에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과 별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정의는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p13 참고자료)을 살펴보면,
‘신진연구자’는 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이거나,
일정 연령 이하인 연구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반면, ‘박사후연구원’
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정규직 연구자 등 독립적인 연구자
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 있는 연구자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신진연구자 대상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사업은 박
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교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
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업은 유사한 연령·경력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대학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관련 연구⁴⁾에 따르면, 신진연구자는 연구경력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연구주제를 확립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하나, 이 시기에 연구비가 단절될 경우 향후 연구경력의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들이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연구에 충분히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적 문제도 겪고 있어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공계 신진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여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설계·개발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를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⁵⁾.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양현채 등), 「정부R&D 수행 이력 분석을 통한 대학 연구자 성장경로 모형 개발 연구」, 2022.12. p110~120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취약한 고용·연구여건과 별도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이들을 독립적인 지원대상으로 두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다수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단기 계약과 잦은 경력 이동을 겪는 등 고용 및 향후 경력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 또한, 진로준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큰 것으로 볼 수 있음⁷⁾.

5) 참고로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52),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62),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67)이 함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 중 ② 및 ③은 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임.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박기범 등),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2021.12.

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황준선), 「박사후연구원 경력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 2023.1.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의 진로 준비가 어려운 이유를 국가 정책적 관심 부족(36%), 양질의 진로 정보 부족(20%), 지원 기관의 부재(9%)로 인식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이공계 신진 연구자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대학 전임교원이나 정규직 연구원 등 지원대상별 여건과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신진연구자의 범위가 정책목적과 지원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사람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에서 신진연구자의 범위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또는 7년 이내, 일정 연령 이하 등 사업의 목적과 지원 필요 대상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대학 전임교원이나 연구기관 정규직 여부 등 연구자의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또한, 동일한 지원사업에서도 정책환경과 지원목적의 변화에 따라 신진연구자의 범위와 자격요건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신진연구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 변화 >

- (∼’10년)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전임 연구자
- (’11년∼’12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면서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인 전임 연구자
- (’13년∼’15년) 대학의 전임·비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연구자
- (’16년∼’20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비전임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
- (’21년∼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 교원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신진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연구경력 이내인 사람으로 법률상 정의할 경우, 다양한 정책목적과 지원수요에 따라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 및 박사후연구원의 정의가 이공계 분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을 이공계 인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의4는 이공계 신진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한 연구경력 이내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박사후연구원

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사학위’가 이공계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박사후연구원’도 비이공계 인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및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를 현행 핵심 이공계인력과 동일한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20조⁸⁾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핵심 이공계인력’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구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법 시행령⁹⁾에서도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과학기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술훈장 수훈자 등 이미 확인된 연구성과와 국가공헌을 전제로 하는 지원제도임.

- 개정안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를 동일한 지원체계에 포함할 경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진연구자의 범위가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고, 지원기준인 ‘성장 잠재력’도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실제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성이 있고, 개정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 연구장려금 등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진연구자의 범위 및 지원 요건인 성장잠재력의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참고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202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8.)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대상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1160-301)	Korea-ITER 박사후연구원 지원	한국인 신진인력 대상 ITER 국제기구 근무를 통한 주요 기술분야 박사후 연구원 연구 지원	1,044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1)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52,50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3)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26,25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5)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2)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인재활용 확산지원 (1744-412)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전략기술 연구 성과 창출 및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경력 형성 도모	1,950	전략기술 유관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 대학 또는 출연연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협약체결 전까지 고용 예정인 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트랙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과학기술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131,102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국외연수 트랙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2,100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복귀·유치 트랙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역량 있는 외국인 박사급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정착을 추진	26,000	해외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그 외 신진연구자 대상	개인기초연구 (1234-301)	개인기초연구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수월성 배양을 위한 창의적 연구 지원	497,523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인 대학 전임 교원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AI최고급신진 연구자지원 (2232-316)	AI스타 펠로우십지 원	AI 융합 분야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 인재 양성	34,000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나노·소재 기술개발 (1139-301)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신진연구자의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소재 연구를 지원하여,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22,725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아태이론 물리센터지원 (1235-404)	국제공동연 구를 통한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아태 연구 거점(아태이론물리센터)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수준 향상 추진	5,073	연구시작일 3개월 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자